

학위과정 등 선발에 관한 지침

제정	2003. 9. 8
개정	2004. 9.17
개정	2005. 6.23
전문개정	2007.10. 8
개정	2015. 6.30
개정	2017. 8.24
개정	2018. 1.19
개정	2018. 3.22
개정	2019. 6.25
개정	2019. 8. 2
개정	2020. 8. 5
개폐정리	2020. 9.11
개정	2022. 2. 22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학위의 취득 등 국내 학술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선발대상) 학위과정은 국내에서 공사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,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직원을 선발대상으로 한다.
<개정 2015. 6.30, 2017. 8.24>

제3조 (선발시기 등) ① 학위과정 선발시기는 전결권자가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9. 8. 2><개폐정리 2020. 9.11>

② 선발인원은 공사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발공고 전에 확정한다.

③ 선발공고 후 인원 미달 또는 선발 취소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 선발인원에 추가할 수 있다.<신설 2018. 1.19>

제4조 (선발절차) ① 국내 학위과정을 희망하는 직원은 신청서(별지서식 제1호)와 연구계획서(별지서식 제2호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공사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에서 정한 심사 및 평가를 통해 합계점수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자 순으로 선발한다.

③ 정부 주무부처 파견근무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. 세부적인내용은 실시계획 수립 시 전결권자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8. 1.19><개폐정리 2020. 9.11>

④ 선발이 확정되었으나 선발유효기간 내에 입학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과를 변경한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 (심사기준 및 평가) ① 국내 학위과정 심사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1. 종합근무평정 50점<개정 2019. 6.25>

2. 연구계획서 30점<개정 2019. 6.25>

3. 교육심사위원회 평가 20점<개정 2019. 6.25>

② 제5조1항3호의 교육심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교육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평가 방법은 별지서식 제6호의 평가표로 하며 위원회 위원 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.<신설 2019. 6.25>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담당 임원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담당 임원, 기획조정실장, 인사처장,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으로 한다. <신설 2019. 6.25><개정 2020. 8.5>

④ 연구계획서는 교육담당 임원이 지명한 4인으로 구성된 평가인단에서 평가(별지서식 제3호)하고, 평가인단 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.<기존 제2항에서 이기 2019. 6.25>

제6조 (연구과제 제출) 국내 학위과정이 전일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과제 중 택일하여 연수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제개요서를 제출하고, 연수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사업 영역

2. 업무프로세스 개선
3. 신상품 제안
4.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
5. 기타 공사발전 전략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

제7조 (연수기간) ① 연수기간은 4년 이내에서 교육기관이 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시 전결권자가 정한다.<단서개정 2015. 6.30><개정 2018. 3.22><개폐정리 2020. 9.11>

② 학위취득기한은 연수기간 이내로 한다. 다만,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수료 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.<신설 2017. 8.24><개정 2022.2.22.>

③연수중인 직원이 휴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 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연수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휴학을 신청(별지서식 제4호)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연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8. 1.19>

제8조 (지원방법) ①매학기 등록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. 다만, 신입학의 경우에는 학점에 관계없이 첫 학기 등록금을 지급한다.

②등록금은 장학금 수령 또는 기타 사유로 등록금이 감액된 경우 실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

제9조 (선발절차의 준용) 기타 3개월 이상 장기파견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선발시기 및 선발절차, 심사기준, 연구과제 제출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 및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처리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7월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 6.30>

이 지침은 2015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8.24>

이 지침은 2017월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1.19>

이 지침은 2018월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 3.22>

이 지침은 2018월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6.25>

이 지침은 2019월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8. 2>

이 지침은 2019월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8. 5>

이 지침은 2020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9.11>

이 지침은 2020월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2. 22>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연수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박사학위과정 진행 중인 직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[별지서식 제1호]<개폐정리 2015. 6.30>

국내 학위과정 신청서

신 청 인	소 속	직 급	성 명
			(인)
최종학력	대학교(원)		학과
과 정 명	대학원	학과	과정
연수기간	20 . . ~ 20 . . (총 학기)		
첨 부 : 연구계획서 1부			
20 년 월 일			

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

연구계획서

작 성 자	소 속	직 급	성 명
			(인)
최종학력	대학교(원) 학과		
신청과정	대학원 학과 과정		
교육기간	20 . . ~ 20 . . (총 학기)		
☐ 연구목적			
☐ 연구개요			
☐ 업무관련성			
☐ 업무활용계획			

연구계획서 평가표

□ 신청인 :

평가항목	배 점	평 가 기 준	점 수
연구계획서	7점	▶ 연구목적의 적정성	(1, 2, 3, 4, 5, 6, 7) 점
	7점	▶ 연구내용의 혁신성	(1, 2, 3, 4, 5, 6, 7) 점
	8점	▶ 업무관련성	(1, 2, 3, 4, 5, 6, 7, 8) 점
	8점	▶ 과정수료 후 업무활용 가능성	(1, 2, 3, 4, 5, 6, 7, 8) 점
합 계	30점		점

첨 부 연구계획서 1부

상기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평가함

20 년 월 일

평 가 자 직 급 성 명 (인)

[별지서식 제4호] <신설 2018. 1.19>

국내학위과정 휴학 신청서

신 청 인	소 속	직 급	성 명
			(인)
과 정 명	대학(원) 학과 과정		
휴학기간	20 . . ~ 20 . . (총 학기)		
사 유			
20 년 월 일			

첨 부 증빙서류

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

교육심사위원회 평가표

□ 신청인 : 소속 직급 성명

평가항목	배 점	평 가 기 준	점 수
선발대상자 적정성	5점	▶ 기본자질(성실성, 책임감)	(1, 2, 3, 4, 5) 점
	5점	▶ 소통·협업능력	(1, 2, 3, 4, 5) 점
	5점	▶ 직무전문성	(1, 2, 3, 4, 5) 점
	5점	▶ 장래성(자기개발노력, 역량향상 등)	(1, 2, 3, 4, 5) 점
합 계	20점		점

상기와 같이 선발대상자의 적정성을 평가함

20 년 월 일

평 가 자 직급 성명 (인)